

알기 쉽게 풀어 쓴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안내서

2021. 6.



참고자료

1. 공직윤리업무편람(2020.6.)
2.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2020.6.)
3.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2020.6.)
4.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처리 업무지침(2020.12.)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20년)
6.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법** : 공직자윤리법 / **영**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Contents

알기 쉽게 풀어 쓴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안내서

제1장 공직자윤리법 업무개관	1
1. 제정 취지	3
2. 적용 대상	3
3. 주요 내용	3
4. 공직유관단체	5
5. 공직자윤리위원회	6
제2장 취업제한제도의 이해	9
1. 취업제한제도 개요	11
2. 취업심사대상자	12
3. 취업심사대상기관	15
4. 밀접한 업무관련성	16
5. 취업심사(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	17
6.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19
제3장 행위제한제도의 이해	21
1. 행위제한제도 개요	23
2. 업무취급제한제도	24
3. 취급제한업무(이해충돌 대상직무)	31
4.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35
5. 취업이력공시제도	37
제4장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41
1. 신고센터 개설·운영	43
2. 신고처리 업무지침	44
부록 1 취업·행위제한 법정서식	47
부록 2 공직자윤리법 연혁	55
부록 3 기관별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 현황	58
부록 4 퇴직공직자 의무사항 안내(인포그래픽)	60

제1장

공직자윤리법 업무개관

1. 제정 취지
2. 적용 대상
3. 주요 내용
4. 공직유관단체
5. 공직자윤리위원회

1 제정 취지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 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2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
※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제외

3 주요 내용

1. 이해충돌 방지의무 (법 제1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직자는 재직 중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퇴직 후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2.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법 제2장)

-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
- 등록재산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3. 주식백지신탁제도 (법 제2장의2)

-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금융사무 관장 국)·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여부를 심사

4. 선물신고제도 (법 제3장)

-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함

5. 취업제한제도 (법 제4장)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됨. 예외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음

6. 행위제한제도 (법 제4장)

- (업무취급제한) ①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② 추가적으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하여 처리하는 일정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제한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받은 재직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아울러, ②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가 금지되며, 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위한 알선행위가 금지됨

7. 기획·총괄기관, 연차보고서, 징계 및 벌칙 (법 제5~6장)

- 인사혁신처장은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과태료부과 통보 조치함

4

공직유관단체

1. 공직유관단체 개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및 임원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 인사혁신처장은 매 반기말까지 관보에 고시(법 제3조의2)

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의무규정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는 재산등록, 취업제한, 행위제한, 선물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임원은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추가로 부과됨

3. 공직유관단체 지정대상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등)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승인하는 기관·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적십자사 등)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주),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재출자·재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코레일유통(주), 한국원자력연료(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등)
-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 공공기관
(88관광개발(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식회사공영홈쇼핑 등)

4. 공직유관단체 현황 : 1,282개 (2020.12.31.)

- 지정기관 : 1,095개(임원선임 872, 재정지원 147, 업무위탁·대행 30, 재출자·
재출연 40, 기타공공기관 6)
 - 법정기관 : 187개(한국은행, 공기업 36, 지방공사·공단 150)
- ※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 가능

Q 공직유관단체에서 지정 제외되어 퇴직신고서를 제출한 임원인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지?

A 공직유관단체 지정 해제일(매년 1.1. 또는 7.1., 퇴직신고서 변동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제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업무내역서를 2회 제출해야 하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
사실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5

공직자윤리위원회

1. 설치근거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법 제9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각급 기관 감사부서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함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설치현황 및 관할 : 265개

- 중앙(5개) :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 지방(260개) : 각 지방자치단체(243), 시·도 교육청(17)에 설치

기관별	위원회(265개)	관할
①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무원
② 대법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 공무원
③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소속 공무원
⑤ 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중앙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원 지방 및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⑥ 지방자치단체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17개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그 자치단체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초자치단체회의의원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226개 : 75시, 82군, 69구)	그 자치단체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⑦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17개)	그 교육청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 기능 및 권한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재산공개
- 금융·부동산정보 조회 승인, 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 허가
-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자 조치 결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확인 및 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이력공시
-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과태료부과, 고발 등

4. 의결정족수

- 일반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회의소집, 개의, 취업제한여부확인 및 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 특별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 재산심사(경고 이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위반 심사(경고 이상), 직권 재심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고발

참고 1. 2021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정

1월	1.29.(금) 14:00	8월	8.20.(금) 14:00
2월	2.26.(금) 14:00	9월	9.17.(금) 14:00
3월	3.26.(금) 14:00	10월	10.22.(금) 14:00
4월	4.23.(금) 14:00	11월	11.19.(금) 14:00
5월	5.28.(금) 14:00	12월(재산)	12.10.(금) 14:00
6월	6.25.(금) 14:00	12월(취업)	12.23.(목) 14:00
7월	7.23.(금) 14:00		

- 1) 위원회 개최일 3주 전 수요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취업제한여부확인 및 승인심사, 업무취급승인 심사 신청서 접수 필요 (예 : 2021.1.29. 개최시 2021.1.6.까지 접수)
- 2)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송되는 기간(5~10일)을 감안하여 심사 신청서 제출

취업제한제도의 이해

1. 취업제한제도 개요
2. 취업심사대상자
3. 취업심사대상기관
4. 밀접한 업무관련성
5. 취업심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
6.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예정인 경우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신청하고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후에 재취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됨

1

취업제한제도 개요

1. 입법 취지

-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40여년 동안 운영되고 있음
-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해 일정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 즉,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혜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위해 퇴직 이후에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취업의 범위 (법 제17조제4항)

-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 직책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봄
※ 소득의 종류(기타소득 등), 상근·비상근 여부와 관계 없이 요건 충족 시 취업으로 간주함

참고 2. 동일기관 재취업 시 심사대상 해당여부

- ▶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가 (1) 퇴직 후 다시 계약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2) 동일 직위·보직에 연임하는 경우 (3) 임원으로 퇴직 후 기관장에 공모하는 경우 등은 퇴직 후 원 소속기관에 대한 민관유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가 없어, 취업심사·업무취급승인심사·업무내역서 심사대상에서 제외('16.1.29. 제248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단, 상기 사안의 경우에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16.2.26. 제249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5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후 동일기관 재취업 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 해당함. 단,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서 '취업가능'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심사 당시와 업무관련성 범위가 동일하여 재심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예) A부처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을 받고 B공사 상임이사로 1년간 근무하고 퇴직 후 B공사 사장에 공모하는 경우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로 심사대상에 해당함

3. 취업심사요건 (법 제17조제1항)

아래 ①항부터 ③항까지 모두 충족하면 취업심사대상이 되고, 거기에 ④항이 해당되면 취업이 제한됨.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함

-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의 직원일 것
-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일 것
- ③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될 것
- 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닌 퇴직공직자,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 취업예정인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 3. 재산등록 의무면제자의 퇴직일 기산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심사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 재산등록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3년을 기산함.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경우에도 업무내역서 및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기산일을 의무면제일로 봄

예) ○○시 감사부서 6급 공무원이 일반부서로 전보(2020.1.1., 의무면제일)되어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퇴직(2021.7.1.)한 경우에 취업제한기간은 의무면제일로부터 3년(2022.12.31.)이며, 2023.1.1.부터는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

* 공직유관단체 직원2급(등록의무자) → 시니어전문직(의무면제자), 대학교 총장(등록의무자) → 평교수(의무면제자)

2

취업심사대상자

-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 7급 이상 또는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 ※ 법령상 당연히 취업심사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재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자임

- (‘20.6.4. 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 업무유형에 따른 취업심사 제외(법 제17조제9항) : 비상대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그 밖에 단순집행적 업무로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참고 4.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조정

- ① 소방공무원 : 소방위·소방장 중 현장·상황관리업무 담당자 재산등록 제외 / 취업심사대상 소방장 이상
 -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 : 재산등록대상 4급 이상 + 사건부서 5~7급 / 취업심사대상 7급 이상
 - ③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직원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임원급 → 수석급 이상 직원
 - ④ 취업심사 완화 : 6~7급(경감·소방경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중 경비·택배원 등 직종*으로 취업시 취업심사 면제
 -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
- ※ 취업심사대상 여부는 퇴직 전 소속기관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부록3 참고)로 문의하여 확인

취업심사대상자 현황

정무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일반직(별정직 포함)		특정직	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기타
1급 2급 3급 4급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장 대학에 준하는 학교의 장	검사, 법관, 헌법 연구관	
5급	① 국방부·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 국방계약, 군사 법원 및 군검찰, 감찰 등)	중령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자치경찰 포함)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4급이상 상당 직위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대학의 처장, 실장	4급이상 상당 직위의 연구관, 지도관, 수석 전문관	
5급이하 7급이상	②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공정 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③ 법무부·검찰청 소속 검찰직, 마약수사직 공무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 ⑤ 감사업무 담당부서 ⑥ 회계부서의 회계관직 공무원 (물류센터, 유·초·중학교 공무원 등 제외) ⑦ 건축·토목 등 특정분야의 인· 허가, 검사·감독, 지도단속 부서 (위원회 승인받은 대민업무 미수행자 제외) ⑧ 식약처 식품위해사범 수사부서 ⑨ 지자체 조세 관련 부서						

* ①,⑥,⑦,⑧ 과 관련된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정함

공직 유관 단체	임원급	①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②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위원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⑤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상근)
	임원 등	〈국방〉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수석급 이상 직원**)
	2급 이상	〈금융〉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원전〉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원전분야), 한국전력KPS(원전분야) [‘20.6월 기준] 〈철도〉 국가철도공단
	4급 이상	〈금융〉 금융감독원

** '20.7.5.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

3

취업심사대상기관

-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재취업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를 매년 12월31일(협회의 경우 6월30일)까지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함
- 취업심사대상기관은 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및 ② 그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협회의 협회 포함), ③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 및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④ 시장형 공기업, ⑤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⑥ 사립학교와 그 설립학교법인, ⑦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⑧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⑨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임
- 2021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 21,138개(2020.12.31.)

참고 5.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인방법

-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취업제한·행위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 “기관명” 검색
 ※ 취업심사대상기관 검색 시 기관명(영문, 한글), 주소, 고시연도 등을 정확히 확인

Q 사립대학 평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A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의 직위(소위 보직교수)에 있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되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취업할 당시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서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였으나, 그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A 취업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경우에 업무내역서 및 취업사실신고서 역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취업심사대상협회로 고시되지 않은 협회에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한지?

A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해당하므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협회·조합·연맹·연합회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성격상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구성원(회원·조합원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Q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인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 취업 후(A부처 → B공사)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인 영리사기업체 고문으로 재취업하는(B공사 → C회사) 경우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A A부처 퇴직일 기준이 아닌 B공사 퇴직일 기준으로 3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B공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예정인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어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를 2회 제출해야 하며, 퇴직 후 10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밀접한 업무관련성

1. 밀접한 업무관련성 적용대상 (법 제17조제2항·제3항)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됨
- ①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적용대상자(부서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3급 이하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제외한 공직자이며, ②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적용대상자(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2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해당함

※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참고 6.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 ①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제1항)
-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③ 2급 이상 공무원
- ④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 1급(상당) 이상 직원
 -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원전분야), 한전KPS(원전분야)
- ⑤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차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기관의 업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A 본부에 근무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 업무, 소속기관에 근무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합니다.

2. 밀접한 업무관련성 범위 (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
-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자세한 설명은 31쪽 참고)

5

취업심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결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취업승인”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함(법 제18조)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취업승인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는 ① 국가안보,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직제나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자체 출자(재출자)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 등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종사했던 분야로 재취업한 경우, ⑦ 본인 처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퇴직 전 처리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있음(영 제34조제3항)

1.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사례

- ① ○○시 주무관이 퇴직 후 건축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요청
☞ (취업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부서 기준 처리한 업무가 없음)을 심사하여 “취업가능” 결정
- ② ○○부 정책보좌관이 퇴직 후 사립대학교 국제교류팀장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 제한여부확인심사 요청
☞ (취업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사업 등 2건)을 심사하여 “취업제한” 결정

2. “취업승인심사” 사례

- ① ○○부 공군중장이 퇴직 후 주식회사 전무로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승인심사 신청
☞ (취업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 해당하는 취업승인사유가 있어 “취업승인” 결정
- ② ○○시 건설교통국장이 퇴직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 승인심사 신청
☞ (취업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불승인” 결정

취업심사 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취업승인신청)
 -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예정확인서
 - 업무취급승인신청서(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

소속기관장

- 확인요청사항(취업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소속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취업심사대상기관, 업무관련성 여부 등 조사 · 확인

※ 확인사항(영 제33조의3제1항)

-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 확인요청사항(취업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 · 조사 등 자료 검토
- 취업심사
- 요청인(신청인), 소속기관장, 소속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결과 각각 통지

- 1)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일은 각 관할 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2) 취업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제재 유형	처벌
■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8호)
■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제1호)
■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해임 (법 제19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10호)

행위제한제도의 이해

1. 행위제한제도 개요
2. 업무취급제한제도
3. 취급제한업무(이해충돌 대상직무)
4.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5. 취업이력공시제도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취급제한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고 퇴직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

1

행위제한제도 개요

1. 입법 취지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는 취업제한제도만으로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에 신설됨
- 퇴직공직자가 공직유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제도만으로는 장래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까지 방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
- 한편, 고액연봉 등으로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경우, 퇴직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곳으로 취업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가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자회사에 취업한 후 모회사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못함
- 이와 같은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업제한제도와 병행하여 도입된 제도임

2. 주요 내용

- 행위제한제도는 업무취급제한제도와 부정한 청탁·알선금지로 나뉨
- 업무취급제한제도는 ①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는 것과,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는 ①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금지하고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②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하여 본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③ 소속기관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

업무취급제한제도

1.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 (법 제18조의2제1항)

- 직업윤리 상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의 담당사건 수임제한 규정과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는 취급할 수 없음
-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는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주요 업무로 재정보조, 인·허가, 감사·검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의 업무를 말하므로 이외의 업무는 퇴직 이후에 취급이 가능함
- 이 법에서 ‘직접 처리’란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로 공문서에 결재·검토·협조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명 등을 한 경우를 말하며, 부서 또는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아닌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가 해당됨
 - 직접 처리한 업무의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단계에 있는 사람에 국한하나, 기관장 등이 문서 등을 통한 형식적인 결재는 하지 않았더라도 회의, 업무보고 등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직접 처리한 업무에 해당함
 - ※ 취업심사 시 대상업무는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이나, 본인 처리업무 승인심사 시 대상업무는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가 기준이 됨
-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했는지 여부는 대상자의 담당 업무, 처리문서, 회의 참석내역,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계약내용, 고문(자문) 계약 체결경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라면 취업심사대상기관인지 여부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취급위반에 해당함

-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의 사례는 ① 재직 중 A회사가 수행하는 B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 후 A회사에 취업하여 B공사 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② 재직 중 A회사와 B통신망 구축 계약서에 서명하고 퇴직 후 C통신회사를 설립하여 B통신망 구축사업의 하청계약을 A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제한되지 않는 사례는 ① 재직 중 A협회 출연금 지급업무를 담당했으나 퇴직 후 A협회에 취업하여 출연금 관련 업무 외의 자문·강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② 재직 중 A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으나 퇴직 후 건축사사무소에 개업하여 B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등이 있음

참고 7.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본인업무)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참고 8. 판례상 '업무'의 개념

-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화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8701)
- ▶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임(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취급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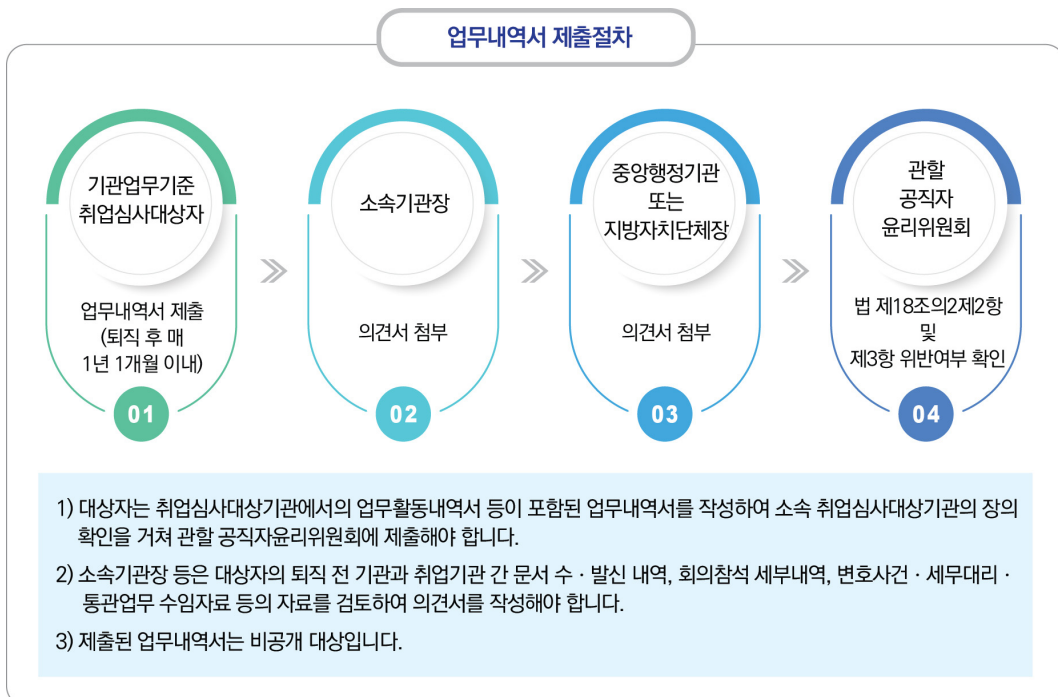
-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전 소속기관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1년간 수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법 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음

-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과 달리 기관업무 취급제한은 퇴직 후 2년간 발생하는 퇴직 전 기관(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취급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음
-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 모두 해당하나, 퇴직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취업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관 업무 취급제한을 받지 않음
- 예를 들어, A부처 고위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취업승인을 받고 B공단에 취업했으나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A부처가 B공단에 대하여 처리하는 재정보조, 감독 등을 업무를 취급한 경우 업무취급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됨

참고 9.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기관업무)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기관업무 취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퇴직 후 2년 간 2회 업무내역서(1년차·2년차) 제출 의무를 부과함



Q 공직자는 재직한 기간 동안 처리한 모든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는지?

A 재직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제한 대상이며,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업무취급승인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퇴직 후 취급예정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A 취업심사는 취업예정인 경우 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이므로 취업심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기 위해서는 제한업무를 취급하기 전(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에 별도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취급승인을 받고 해당 업무를 취급해야 합니다.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2년 동안 2개 이상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업무내역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A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제한이 목적이므로,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재산비공개자 중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데 업무내역서는 제출해야 하는지?

A 자격증 소지자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라면 업무내역서 및 취업사실신고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사립대학에 직위 없는 교원으로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데 업무내역서는 제출해야 하는지?

A 사립대학에 직위 없는 교원으로 취업한 경우 해당 대학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업무내역서 및 취업사실신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취업예정직위가 기관장에 해당되어 담당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취급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하여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기관장의 경우 문서 등을 통한 형식적인 결재는 하지 않았더라도 회의, 업무보고 등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업무취급승인심사(법 제18조의2제3항)

-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음

- 업무취급승인 심사대상자는 제한업무 취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 취급 전이면 취업한 후라도 신청이 가능함
- 다만, 현직자에게 업무취급승인 심사신청을 허용할 경우 재직 중 업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사신청 대상자를 취업심사 절차와 같이 퇴직공직자에 한정함

1. “본인업무 승인심사” 사례

- ① ○○공단 3급 직원이 ○○공사 부장에 취업하여 법 제17조제2항제2호(인증)에 대한 업무취급승인을 요청한 경우
 - ☞ (업무취급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업무취급승인” 결정
- ② ○○시 3급 공무원이 ○○공단 전무이사에 취업하여 법 제17조제2항제1호(재정보조)에 대한 업무취급승인을 요청한 경우
 - ☞ (업무취급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고, 해당 업무를 취급할 경우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취급불승인” 결정

2. “기관업무 승인심사” 사례

- ① ○○부 고위공무원이 ○○공단 이사에 취업하여 법 제17조제2항제2호(인·허가), 제7호(사건수사)에 대한 업무취급승인을 요청한 경우
 - ☞ (업무취급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공의 이익 및 해당 업무 취급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취급승인” 결정
- ② ○○부 고위공무원이 ○○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업하여 법 제17조제2항제5호(연구용역), 제6호(감독)에 대한 업무취급승인을 요청한 경우
 - ☞ (업무취급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구용역 업무가 진행 중인 점, 정기감사 등의 업무가 존재하는 점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할 경우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업무취급불승인” 결정

3. “업무내역서 심사” 사례

- ① ○○위원회 고위공무원이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취업한 후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여 심사한 경우
 - ☞ (위반사항없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과 ○○주식회사 간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취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반사항없음” 결정
- ② ○○부 고위공무원이 ○○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업한 후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여 심사한 경우
 - ☞ (업무취급위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아도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취급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퇴직 전 소속기관이 ○○협회를 상대로 한 법 제17조제1항(재정보조) 및 제2호(임원승인)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취급위반(과태료부과)” 결정

※ 법 제3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업무취급승인심사 절차

퇴직공직자

- 업무취급승인 요청
 - 제한업무 취급 전(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
- 제출서류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취업 전) 취업예정확인서
 - (취업 후)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 (개업) 사업자등록증, 자문계약서 등

소속기관장

- 업무취급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이송

소속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업무취급 심사대상자 여부 등 조사·확인
 - ※ 확인사항(영 제35조의2제2항)
 - 신청인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신청업무가 제한업무(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안보 · 공익, 영향력가능성 등 예외사유
(법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업무취급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업무취급승인 심사 요청내용 확인 · 조사 등 자료 검토
- 업무취급승인여부 결정
- 신청인, 소속기관장,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결과 각각 통지

- 1)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일은 각 관할 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2) 업무취급승인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10. 취업심사대상자와 업무취급심사대상자 비교

구분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심사대상자
심사 목적	취업 가능여부	업무취급 가능여부 ※ 취업 또는 개업 여부와 무관
신청 시기	취업개시 30일 전	제한업무 취급 전 (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
심사 대상자	일부 공직자	모든 공직자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① 부서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3급 이하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제외한 자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① 본인 처리업무 심사대상자(§18조의2①) : 모든 공직자 ② 기관업무 심사대상자(§18조의2②) :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4. 업무취급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제재 유형	처벌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제2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1항)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9호)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해임 (법 제19조제1항제2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10호)

3

취급제한업무(이해충돌 대상직무)

1. 연혁

- 공직자윤리법 제정(1981.12.31.) 당시 법 제17조제2항에서 퇴직공직자의 담당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0조에서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영리사기업체에 관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 기업체로의 취업제한을 규정
- 공직자윤리법 개정(2011.7.29.) 당시 이해충돌방지의무·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등의 조문을 신설하면서 취업제한제도의 업무관련성 범위를 업무취급제한제도의 취급제한업무에 차용함

2. 취급제한업무의 유형(법 제17조제2항 각 호)

-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중 취급제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으면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취급승인을 받고 해당 업무를 취급해야 함

-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⑧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기준·평가항목 등 결정, 신청서 접수·심사, 보조금액 등 확정·지급·정산 및 후속조치(평가·감사)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업무란 국가기관 등이 공공예산을 “직접” 교부하지 않고 국가 외의 기관을 통해 다시 교부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통한 재정지원 사업이 해당함
- 재정보조 업무는 일반적으로 대상 사업, 금액 등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고 특정 연도의 보조금 지원 예산은 당해 연도 담당자의 권한이므로 전년도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익충돌의 우려도 없으므로 당해 연도 보조금 제공업무에 한정하여 퇴직 후 업무취급을 제한함
- 기타 재정보조금에는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이 포함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고용보험법」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출연금, 「지방교부세」상 지방교부세, 특정자금 운용에 필요한 각종 기금 등
-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공공재정 지급금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직자는 퇴직 후 해당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예정인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참고 1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 의의 : 전체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약 229조)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 법 제정·시행(2020.1.1.)
2. 적용 배제 : 조세, 부담금, 벌금·과태료,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등
3.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4.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5.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 중앙행정기관(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교육자치단체(23개)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예산비목(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연구개발인건비 등)으로 정함
6.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 국가재정법 등 519개 법률
 - ※ 민간위탁금은 사무 위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등의 성격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제외됨

참고 12. 법령상 위탁업무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에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제9조에 위탁에 따른 감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3조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지휘·감독, 감사 규정을 둠
※ 법령상 위탁기관에는 공직유관단체 중 위탁·대행기관(30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95개) 등이 있음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하는 업무

신청서 등 접수, 인·허가 등을 위한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시험평가, 인·허가 등 의사결정, 인·허가 등 관련 사후 관리·감독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인·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가 해당함
- 기타 업무에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 이에 준하는 업무 포함
-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사후 관리·감독하는 행정지도, 단속 등의 업무 포함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및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단속,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물 수질관리 지도 등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검사·감사계획 등 수립,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처분 통보, 후속조치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 외에 조사, 점검 등의 업무 포함
※ 「산업표준화법」상 한국산업규격(KS) 시판품조사,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 안전관리 점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검사,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재무감사 등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대상 업체 선정, 조사인력 편성, 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확인, 조세의 부과·징수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조세 업무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 등)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판매세, 도시계획세 등) 업무로 구분함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기본(사업)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감독·검사·검수 등), 대금지급, 후속조치(평가·감사 등)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 목적물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 계약으로 구분함
※ 「방위사업법」상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계약 및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복구 관련 업무 위탁계약 등 개별 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용역 계약은 일반용역(정보화사업, 폐기물처리, 시설물관리, 청소, 경비, 조경관리, 육상운송, 학술연구, 전시 및 행사대행, 광고 및 디자인, 감리 및 검사, 장비 유지·보수, 보험 용역 등)과 기술용역(건설기술용역,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으로 구분함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심리·처분 검토, 결과 통보 및 사후 관리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을 포함
- 법령상 감독 업무란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감독권한이 법령 및 이에 근거한 내부 업무분장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상시 고유업무로 부여된 경우를 뜻하며, 법령상 감독부서가 아니라 그 감독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입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467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감독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경비업법」상 경찰청, 개별 법령에 따른 감독기관 등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취업심사대상기관(법인·단체 등)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심판·심결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기타 업무에 재판, 결정, 조정·중재, 화해 등 이에 준하는 업무 포함
※ 각급 법원의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 「민사집행법」상 경매개시결정,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중재법」상 당사자의 화해 등

⑧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정책 등의 수립 · 조정 · 시행 · 평가 · 감사 · 후속조치 · 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처리

- 정책 · 사업 등의 검토 · 결재 또는 안건 검토 · 심의 등을 위한 회의참석 등의 의사결정 관여
- 검토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 협조, 정책건의 · 반영, 민원처리 등 다양한 형식 · 모습으로 특정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해당 업무는 포괄적인 사안이므로, ① ~ ⑦까지의 업무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검토

4

부정한 청탁 · 알선 금지

1. 부정한 청탁 · 알선 금지(법 제18조의4)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됨
-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
- 또한, 국민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 ·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①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했는지, ② 지위 ·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③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했는지, ④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직원과 접촉하여 조달계약 및 보조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 각종 검사·조사에 관여하는 행위, 관급자재 영업행위, 직무관련자의 인사청탁행위 등이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에 해당함
- 청탁·알선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에게 원상회복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신고자는 부정한 청탁·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및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

Q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는지?

A 법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신고로 인한 징계조치 등 어떤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이 금지 되므로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법 제22조제17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상 처벌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A 이 경우 퇴직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 하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절차상 퇴직공직자로부터 처음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재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거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알선 금지(법 제18조의5)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가 금지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됨

3.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제재 유형	처벌
■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제3호)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한 청탁·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법 제22조제17호)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청탁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법 제22조제18호)
■ 소속기관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한 경우	시정권고 (법 제23조)
■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해임 (법 제19조제1항제2호)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10호)

5

취업이력공시제도

1. 입법 취지

-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2014.12.30.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 제도 신설
- ※ 2015.3.31. 이후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2. 주요 내용 (법 제19조4)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취업이력을 공시함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취업사실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이력공시에는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과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이 포함됨

참고 1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 ▶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일관성 유지 및 퇴직공직자의 법정 의무 준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는 퇴직일 당시의 직위 또는 직급으로 판단함
예) 관세청 지방세관장(3급, 기관업무기준)이 본청 국장(3급, 부서업무기준)으로 퇴직한 경우 부서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여 업무내역서 및 취업사실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단, 취업심사 시 지방세관장 재직 기간 동안은 해당 소속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함

Q 취업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다음 해부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취업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취업심사는 취업예정인 경우 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이므로, 실제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취업이력은 공시 되고 있습니다.

3. 취업사실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재 유형	처벌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11호)

참고 14. 취업·행위제한 적용기간

구분	기준일 : 퇴직일 (or 의무면제일)
① 모든 공직자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영구 (본인업무 취업제한)
② 취업심사대상자	 3년 (취업제한)
 추가 의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고위공직자)	 2년 (기관업무 취업제한 +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10년 (취업사실신고 의무 + 취업이력공시)

- ① 퇴직일을 재산등록 의무면제일로 보는 경우(ex. 재산등록부서→일반부서)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취업·행위제한 기간을 기산합니다.
- ②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여 다시 공직자(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 된 경우 취업·행위제한 적용기간은 재취업한 기관에서의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③ 모든 공직자는 본인이 재직 중에 직접 담당하였던 일정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취업심사대상자는 본인업무 취업제한 규정 준수 외에 취업제한기간(3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예정인 경우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해야 합니다.
-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2개 이상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예정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대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⑥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면 기관업무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업무 취업제한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 ⑦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기간(3년) 내에 취업심사를 받고 실제 취업한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신고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⑧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기간(3년)이 경과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장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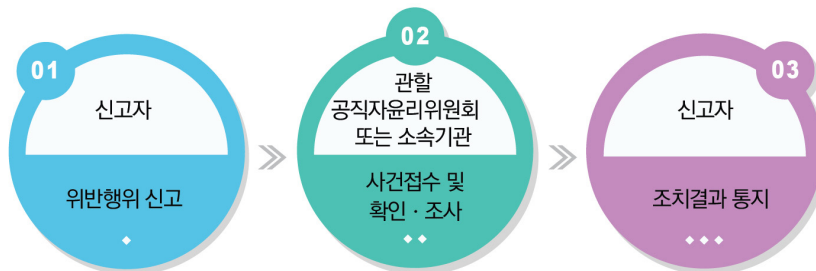
1. 신고센터 개설·운영
2. 신고처리 업무지침

- ☞ 인사혁신처는 전·현직 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직윤리시스템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대국민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음(2021.1.4.시행)

1 신고센터 개설·운영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고대상이 됨
- 위반행위에는 ①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②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취급한 행위, ③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 ④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알선하는 행위가 있음
-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에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전용 전화(044-201-818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신고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우편신고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신고사건에 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법 위반행위에 따라 퇴직 공직자는 형벌·과태료 및 해임요구, 재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요구, 소속기관장은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됨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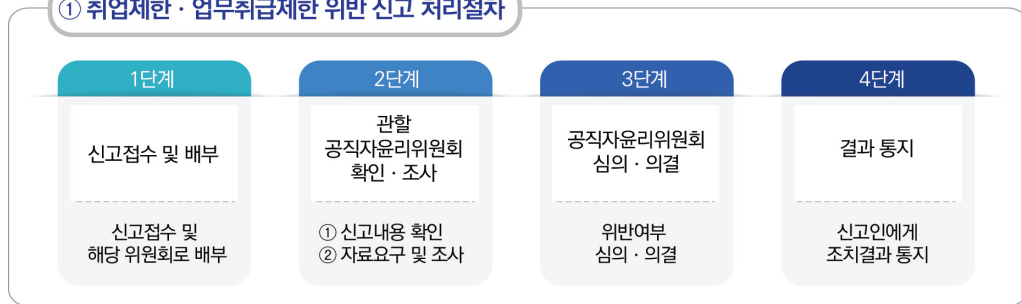


- 1)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외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 3)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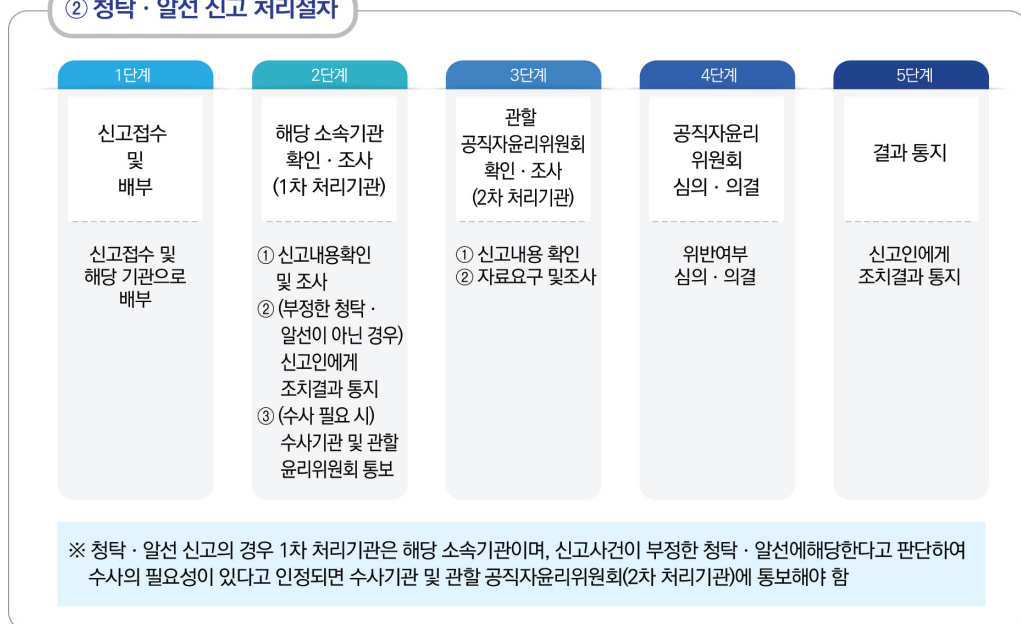
2 신고처리 업무지침

- 인사혁신처 내 설치된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고 방법 및 신고처리 절차, 신고서식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마련함
- 업무지침은 총칙, 신고 처리절차, 행정사항, 신고서식 등으로 구성되며, ①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신고와 ② 청탁·알선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지침은 2021.1.4.부터 시행하나, 시행일 이전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됨

①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신고 처리절차



② 청탁·알선 신고 처리절차



부록

1. 취업·행위제한 법정서식
2. 공직자윤리법 연혁
3. 기관별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 현황
4. 퇴직공직자 의무사항 안내(인포그래픽)

1 취업 · 행위제한 법정서식



붙임 1.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1. 6. 23.>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요청인

〇〇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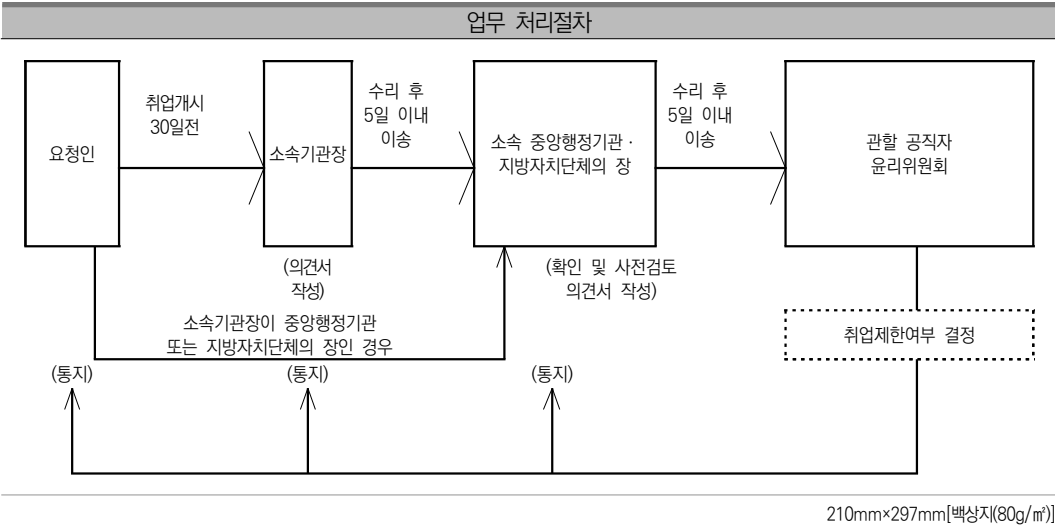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의7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업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
------	--

작성방법

- 소속 · 직위 · 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 직위 ·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 ·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 · 허가, 검사 ·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 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붙임 2. 취업 예정 확인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 <개정 2020. 6. 4.>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취업예정일
	채용방법 ※ 공모·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역할 및 활용계획		
작성자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FAX / 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기관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6. 23.>

(아쭈)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직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연간 외형거래액 :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의7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업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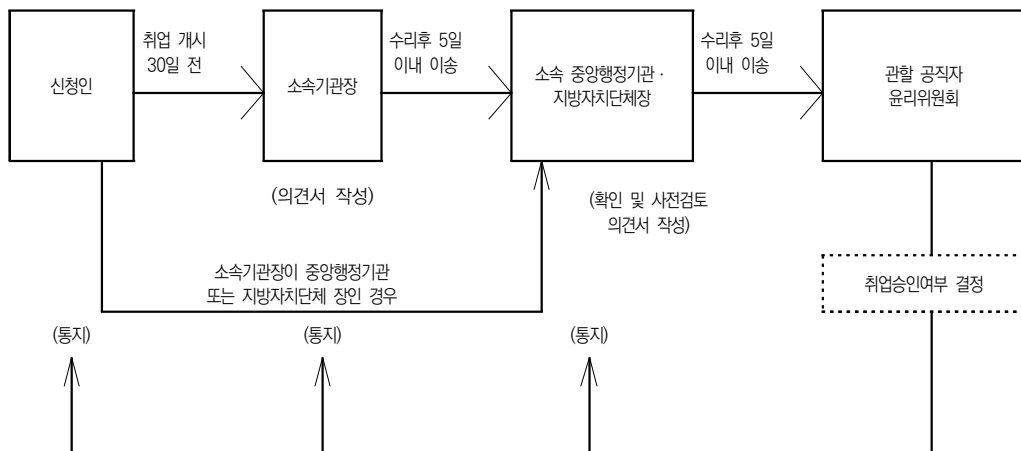
자서반반
그요요반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차료비율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자산을 적으십시오.
4.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차료비율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급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와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급승인 신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m²)]

(뒤쪽)

업무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 (예정) 사실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담당(예정)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의 취급 필요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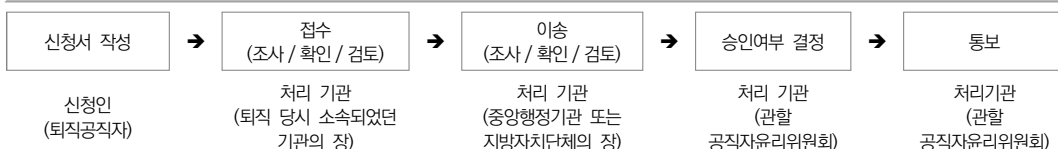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등), 개업 증명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중 하나를 첨부하십시오.
------	--

업무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5. 업무내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1. 6. 23.>

업무내역서(년차)

제출구분	퇴직일 기준 1년차	~	퇴직일 기준 2년차	~
업무취급승인 심사현황	심사일	~	심사결과	~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퇴직일			
	퇴직 전 2년간 소속·직위 등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취업직위		
	취업일	기관규모 (직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내용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 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자	취업기관장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업무 처리절차

```

    graph LR
      A[업무내역서 작성  
제출인] --> B[확인  
처리 기관  
(해당 업체)]
      B --> C[검토1  
처리 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C --> D[검토2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D --> E[접수 및 확인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붙임 6. 취업사실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직위(직급 등)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취업일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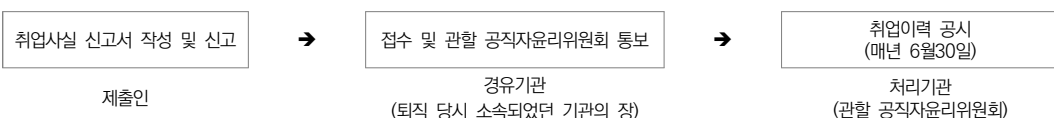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최종 퇴직일 이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했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2 공직자윤리법 연혁

연도	법률	시행령	비고
'81.12.31. (제정) *시행 '83.1.1.	○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 승인 근거 ○ 퇴직일로부터 2년간 /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 후 재취업 시 ○ 자본금 100억원 / 외형거래액 300억원 이상	〈윤리법 제정 배경〉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원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93.6.11. (개정) *시행 '93.7.12.	○ 취업제한대상 범위 확대 ○ 취업제한위반자 처벌규정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급이상 → 4급(일부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교육 연구관, 대학의 처장·실장의 직위에 보직된 교수·부교수 ○ 5급·6급(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검찰공무원) ○ 경정·경감인 경찰 ○ 소방령·소방경인 소방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집행 간부	
'01.1.26. (개정) *시행 '01.4.27.	○ 퇴직 전 2년 → 3년으로 연장	○ 자본금 100억 → 50억,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 50억원으로 확대 * 자본금 50억 /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입법적으로 구현
'05.11.16. (개정) *시행 '06.1.1.		○ 권한조정 * 부처에서 취업심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변경 ○ 취업승인 사유의 추가 (6개 → 7개) *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 가능	
'06.12.28. (개정) *시행 '07.6.29.	○ 취업심사의 관할 범위 조정 - 지방3급 이상 등 정부공무원 기관 ○ 영리사기업체 등에 자료제출 요구 신설		

연도	법률	시행령	비고
'09.11.23. (개정) *시행 '09.11.23.		○ 취업승인 사유 중 - 퇴직공직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과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로 변경	
'11.3.29. (개정) *시행 '11.3.29.		○ 우선취업 신청 사유 구체적 명시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에서 관할 공윤위로 변경	○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우선취업 제도를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
'11.7.29. (개정) *시행 '11.10.30.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퇴직 전 3년→ 5년으로 확대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 영리사기업체 +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 사외이사, 비상근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 포함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일정 업무 영구 취급 금지 ○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취급금지 및 업무내역서 제출 (1+1 업무 금지) ○ 퇴직공무원(공직유관단체 포함)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하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신고토록 함	○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의 규모 확대 - 법무법인, 회계법인 :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 세무법인 : 50억원 이상 ○ 취업제한여부 및 취업 승인 등의 절차 신설	○ 취업심사대상 기관 범위 확대 ○ 재산공개의무자 확대 - 소방경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14.6.25. (개정) *시행 '14.6.25.		○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규모 하향조정 - 자본금 50억원→10억원 - 외형거래액 150억원→100억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 종전 취업심사대상의 예외로 인정되던 협회도 모두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협회로 함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연도	법률	시행령	비고
'14.12.30. (개정) *시행 '15.3.31.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확대	○ 공직유관단체 등의 규모 및 범위 규정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취업이력 공시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18.7.2. *시행 '18.7.2.		○ 협회의 협회도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 취업제한 협회를 매년 6월 말까지 고시	○ 취업심사대상기관 대상물 명확화
'19.12.3. (개정) *시행 '20.6.4.	○ 안전·방산·사학 분야는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 ○ 비상대비·예비군부대 지휘 업무 및 단순집행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윤리위가 고시한 업무는 취업심사에서 면제 ○ 취업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 항목에 추가 ○ 임의취업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기관을 국세청(기타소득)까지 확대 ○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 변경 ○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청탁알선 신고 대상자 확대(청탁·알선 받은 재직자→누구든지) ○ 행위제한 위반 신고자 보호 강화 및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안전·방산·사학 분야 범위 규정 ○ 공정위 5~7급, 국과연 수석급 이상 추가 ○ 6~7급 실무직 중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직업표준분류에 따라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로 취업하는 자는 취업심사에서 면제 ○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포함 ○ 소속기관장이 행위제한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 ○ 행위제한 위반시 직무참여 배제조치 규정	○ 취업심사대상기관 용어변경, 범위 확대 ○ 취업심사대상자 조정 ○ 행위제한 실효성 확보

3 기관별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 현황

연번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1	감사원	감찰담당관	02-2011-4848
2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10-1227
3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1
4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	044-200-2846
5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044-202-5055
6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	044-200-6608
7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	043-719-1155
8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044-200-4106
9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02-2100-2796
10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044-200-7093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02-2100-2477
12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02-397-7369
13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	044-215-2216
14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139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044-202-4062
16	외교부	감사담당관	02-2100-8415
17	통일부	감사담당관	02-2100-5905
18	법무부	감찰담당관	02-2110-3288
19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	02-748-6921
20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044-205-1150
21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044-203-2070
22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	044-201-1213
23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044-203-5059
24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	044-202-2058
25	환경부	감사담당관	044-201-6149
26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	044-202-7811
27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7
28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4-201-3162
29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	044-200-5038
30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042-481-4587
31	국세청	감찰담당관	044-204-2693
32	관세청	감사담당관	042-481-7709
33	조달청	감사담당관	070-4056-7031
34	통계청	감사담당관	042-481-6917
35	검찰청	감찰1과	02-3480-2400
36	병무청	감사담당관	042-481-2616
37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	02-2079-6126
38	경찰청	감사담당관	02-3150-0483
39	소방청	감사담당관	044-205-7321
40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13

연번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41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	063-238-0180
42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007
43	특허청	감사담당관	042-481-3513
44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	043-719-7245
45	기상청	감사담당관	02-2181-0593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76
47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063-733-1141
48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032-835-2913
49	한국은행	인사운영팀	02-759-5686
5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02-2133-3162
51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051-888-1666
52	대구광역시	감사관	053-803-2325
53	인천광역시	감사관	032-440-3182
54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062-613-2301
55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042-270-2714
56	울산광역시	감사관	052-229-2172
5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300-2843
58	경기도	조사담당관	031-8008-2973
59	강원도	감사위원회	033-249-3582
60	충청북도	감사관	043-220-2924
61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041-635-5445
62	전라북도	감사관	063-280-2393
63	전라남도	감사관	061-286-2241
64	경상북도	감사관	054-880-4362
6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055-211-2194
66	제주특별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	064-710-2083
67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02-399-9049
68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051-860-0255
69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	053-231-0123
70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032-420-8165
71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062-380-4225
72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042-616-8154
73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052-210-5385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044-320-1313
75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65
76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033-258-5565
77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043-290-2074
78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041-640-7936
79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063-239-3224
80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	061-260-0229
81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054-805-3236
82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055-210-5205
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064-710-0164

4

퇴직공직자 의무사항 안내(인포그래픽)



알기 쉽게 풀어 쓴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안내서

발 행 일 : 2021년 6월

발 행 처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취업제한 TEL : 044-201-8477, 8481

행위제한 TEL : 044-201-8478, 8480

인 쇄 처 : 나라인쇄 TEL : 044-866-6384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 관련 정보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